

##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7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불부합 되거나 중복되는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잡종재산 등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게 하는 경우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연 4퍼센트로 인하하고, 1981. 4.30이전 사유건물이 점하고 있던 잡종재산 등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연6퍼센트로 각각 인하 조정함. (안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 다.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 등의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이 1월미만 연12%, 1월이상~3월미만 연13%, 3월이상~6월미만 연14%, 6월이상 연15%로 차등적용하고 연체료 부과 상한기한(납기일로부터 60월)을 두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함. (안 제28조제1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3.2.20 ~ 3.12(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행정자치부)
- 현행조례(전문)

#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 · 수익허가”로 하고, 동조본문중 “사용허가”를 “사용 · 수익허가”로 하며,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허가조건

제22조제1항중 “연5퍼센트”를 “연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연8퍼센트”를 “연6퍼센트”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중 “제23조제3항제3호”를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의 본문중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하며,”를 삭제하고, “연15퍼센트의 연체료”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로 하며,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1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하고, “부동산 처분신탁” 다음에 “및 토지신탁”을 삽입한다.

제39조의2제5항제1호중 “광역시 · 시 · 군의 읍 · 면지역”을 “기타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39조의4제4항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내지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4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회 계 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이범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담당 정상래
	담당자 성명·전화	오동원 (행정 2174)

##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p>	<p>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3조제3항</p> <p>-----</p> <p>-----</p> <p>-----</p> <p>-----</p> <p>-----</p> <p>-----</p>
<p>②~⑤(생 략)</p>	<p>②~⑤(현행과 같음)</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p> <p>-----</p> <p>----- &lt;삭 제&gt; -----</p> <p>-----</p> <p>-----</p> <p>-----</p> <p>-----</p> <p>-----</p> <p>-----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 -----</p> <p>-----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p> <p>-----</p> <p>-----</p> <p>-----</p>
<p>②~④(생 략)</p>	<p>②~④(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③(생략)</p> <p>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u>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u>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500백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p> <p>2. ~5.(생략)</p> <p>⑤~⑥ (생략)</p>	<p>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1.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u> -----</p> <p>-----</p> <p>-----</p> <p>-----</p> <p>-----</p> <p>-----</p> <p>-----</p> <p>2. ~5.(현행과 같음)</p> <p>⑤~⑥(현행과 같음)</p>